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안

1. 제정이유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(법률 제16473호, '19.8.20 제정, '20.8.21 시행)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(안 제2조)
- 나.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 서식을 마련함(안 제3조)
- 다.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을 구체화함(안 제4조)
- 라. 재사용 화환 표시,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마련함(안 제5조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0. 5. 8. ~ 6. 18., 7. 3. ~ 8. 4.)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)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
제3조(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)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)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조(증표)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입·검사 시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신청서

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」 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1. 화훼산업 진흥지역 명칭:
2.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의 사유:
3. 기 타

붙임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계획 1부. 끝.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

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)

우편번호

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팩스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 구분

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지정대상 전담기관	명칭		
	위치		
	면적 m ²		
신청내용	지정목적 및 필요성		
	지정기간 ~		
	사업개요		
	주요 화훼사업		

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장

직인

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2. 위치도 3.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.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5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. 사업실적(사업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7. 기타 화훼문화진흥 업무 추진 관련 증빙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1.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

(앞쪽)

제 호

조사공무원증

사 진

3.5cm×4.5cm

(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
성 명

행정기관명

60mm×90mm[백상지 120g/㎡]

(색상: 연노랑색)

(뒤쪽)

조사공무원증

소속/직급:

성 명:

생년 월일:

위 사람은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기관장명의 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2.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조사

(앞쪽)

제 호

조사공무원증

사 진

3.5cm×4.5cm

(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
성 명

행정기관명

60mm×90mm[백상지 120g/㎡]

(색상: 연노랑색)

(뒤쪽)

조사공무원증

소속/직급:

성 명:

생년 월일:

위 사람은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기관장명의 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
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재사용 화환 표시방법(제4조 관련)

1. 표시방법

가. 리본을 부착하는 경우

- 1) 위치: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리본 전면의 좌측 상단에 표시한다.
- 2) 문자: 한글로 표시한다.
- 3) 글자 크기

가) 리본의 폭이 12cm 이상인 경우

- (1) “재사용 화환”표시: 50포인트 이상
- (2) 그 외 내용 표시: 25포인트 이상

나) 리본의 폭이 7cm이상 12cm 미만인 경우

- (1) “재사용 화환”표시: 40포인트 이상
- (2) 그 외 내용 표시: 20포인트 이상

다) 리본의 폭이 7cm미만인 경우

- (1) “재사용 화환”표시: 20포인트 이상
- (2) 그 외 내용 표시: 10포인트 이상

- 4) 글자색: 리본의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.

- 5) 그 밖의 사항

- 리본에 직접 인쇄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·각인·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나. 리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

- 1) 꽃말, 스티커(붙임 딱지)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면에 표시한다.

- 꽃말, 스티커: 가로 20cm × 세로 15cm 이상

- 2) 문자: 한글로 표시한다.

- 3) 글자 크기

- (1) “재사용 화환”표시: 70포인트 이상
- (2) 그 외 내용 표시: 40포인트 이상

다. 인터넷(통신판매망), 방송광고를 활용하여 판매하는 경우

- 1) 화환에 표시하는 것과는 별도로,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‘재사용 화환’이라고 표시한다.
- 2)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되,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색으로 한다.

2. 표시방법 예시

(1) 리본을 부착하는 경우

재사용 화환		10 cm
판매업체명	00꽃집	
전화번호	02-000-0000	

12cm

(2) 리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

재사용 화환		15cm
판매업체명	00꽃집	
전화번호	02-000-0000	

20cm